



제432회국회(임시회)
제1차 성평등가족위원회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업무 법률에 규정 및 추가〉
■ 이주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5163호)

2026. 2.

성 평 등 가 족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이옥순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업무 법률에 규정 및 추가	3
[참고자료 1]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개요	9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이주희의원 등 16인
2. 제 안 일 : 2025. 12. 11.
3. 회 부 일 : 2025. 12. 12.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청소년에 대한 상담·긴급구조·자활·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동법 시행령에서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구체적인 업무로서 청소년과 부모에 대한 상담·복지 지원, 폭력·학대 등의 피해 청소년 긴급구조 및 일시보호, 청소년 자활·재활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우울·불안 등 심리적 고통을 겪는 청소년이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소아·청소년 우울증 환자가 2020년 49,000여명에서 2024년 86,000여명으로 5년간 약 72.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또한, 경계선 지능 청소년의 경우 일반 청소년에 비해 인지능력 등이 부족하여 학습과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따라서 이러한 청소년들도 사회적 보

호·지원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적극적으로
심리상담·맞춤형 상담·복지 등의 지원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

이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업무 범위를 세분화하여 명확하게 하고,
우울·불안 등 심리적 고통을 겪는 청소년에 대한 심리상담 지원과
경계선 지능 청소년에 대한 맞춤형 상담·복지 지원이 포함되도록 명
시하려는 것임(안 제29조).

Ⅲ. 검토의견

1.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업무 법률에 규정 및 추가

개정안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업무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센터의 업무에 우울·불안 등 심리적 고통을 겪는 청소년에 대한 심리상담 지원과 경제선 지능 청소년에 대한 맞춤형 상담·복지 지원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2항 신설).

현 행	개 정 안
제29조(청소년상담복지센터) ① (생략) <u><신 설></u>	제29조(청소년상담복지센터) ① (현행과 같음) <u>②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u> 1. <u>청소년과 부모에 대한 상담·복지 지원</u> 2. <u>상담·복지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u> 3. <u>상담 자원봉사자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교육 및 연수</u> 4. <u>청소년 상담 또는 긴급구조를 위한 전화 운영</u> 5. <u>청소년 폭력·학대 등으로 피해를 입은 청소년의 긴급구조, 법률·의료 지원 및 일시보호 지원</u>

② ~ ⑤ (생략) ⑥ 제1항에 따른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운영 기준 및 종사자의 자격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u>청소년의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자활 및 재활 지원</u> 7. <u>우울·불안 등 심리적 고통을 겪는 청소년에 대한 심리상담 지원</u> 8. <u>경계선 지능 청소년을 위한 맞춤형 상담·복지 지원</u> 9. <u>그 밖에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청소년에 대한 상담·복지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u> ③ ~ ⑥ (현행 제2항부터 제5항까지와 같음) ⑦ 그 밖에----- ----- ----- ----- -----.
--	---

현행법 제29조제6항1)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

- 1)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청소년상담복지센터)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청소년에 대한 상담·긴급구조·자활·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에 설치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시·군·구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업무를 지도·지원하여야 한다.
-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군·구에 설치하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시·군·구에 설치하는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
- 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법인으로 설치할 수 있다.
- ⑥ 제1항에 따른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운영 기준 및 종사자의 자격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업무는 현행법 시행령 제14조²⁾에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코로나19 이후 청소년 정신건강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바, 2025년 「생활 속 질병·진료행위 통계」³⁾에 따르면, 10세~19세 청소년 우울증 환자가 2020년 47,186명에서 2024년 82,755명으로, 75.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⁴⁾.

또한 경계선지능⁵⁾ 청소년의 경우 일반 청소년에 비해 인지능력 등이 부족하여 학습과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대상에는 포함되지

2)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14조(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 등) ①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하 “청소년상담복지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소년과 부모에 대한 상담·복지지원
2. 상담·복지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3. 상담 자원봉사자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교육 및 연수
4. 청소년 상담 또는 긴급구조를 위한 전화 운영
5. 청소년 폭력·학대 등으로 피해를 입은 청소년의 긴급구조, 법률 및 의료 지원, 일시 보호 지원
6. 청소년의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자활(自活) 및 재활(再活) 지원
7. 그 밖에 청소년상담 및 복지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인정하는 사업

3)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25. 12. 26.

4) < 최근 5년간 연령 10세 구간별 우울증 진료 현황(2020년~2024년) >

(단위:명, 억 원)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연평균 증감률
9세 이하	환자수	1,276	1,832	2,216	2,403	2,745	21.1%
	진료비	5	7	10	11	14	29.3%
10세~19세	환자수	47,186	56,921	67,907	73,511	82,755	15.1%
	진료비	305	399	467	541	634	20.1%

※ 2025년 『생활 속 질병·진료행위 통계』에서 일부 말채

5) 「강원특별자치도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계선지능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적장애인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인지능력 또는 학습능력 등의 부족으로 사회생활의 적응에 어려움을 겪어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2. “경계선지능인 지원”이란 진단, 치료, 돌봄, 교육 및 취업 등에 이르기까지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전반적인 맞춤형 지원을 말한다.

않음.

이에 개정안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업무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센터의 업무에 우울·불안 등 심리적 고통을 겪는 청소년에 대한 심리상담 지원과 경계선 지능 청소년을 위한 맞춤형 상담·복지 지원을 추가하려는 것으로, 정신건강 취약 청소년과 경계선지능 청소년에 대한 상담·복지 지원과 관련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역할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업무 비교 >

현행(시행령 제14조제1항)	개정안(법 제29조제2항 신설)
1. 청소년과 부모에 대한 상담·복지지원 2. 상담·복지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3. 상담 자원봉사자와 「청소년기본법」 제3조 제7호에 따른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교육 및 연수 4. 청소년 상담 또는 긴급구조를 위한 전화 운영 5. 청소년 폭력·학대 등으로 피해를 입은 청소년의 긴급구조, 법률 및 의료 지원, 일시 보호 지원 6. 청소년의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자활(自活) 및 재활(再活) 지원 <u><신 설></u> <u><신 설></u> 7. 그 밖에 청소년상담 및 복지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인정하는 사업	1. 청소년과 부모에 대한 상담·복지 지원 2. 상담·복지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3. 상담 자원봉사자와 「청소년기본법」 제3조 제7호에 따른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교육 및 연수 4. 청소년 상담 또는 긴급구조를 위한 전화 운영 5. 청소년 폭력·학대 등으로 피해를 입은 청소년의 긴급구조, 법률·의료 지원 및 일시보호 지원 6. 청소년의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자활 및 재활 지원 7. <u>우울·불안 등 심리적 고통을 겪는 청소년에 대한 심리상담 지원</u> 8. <u>경계선 지능 청소년을 위한 맞춤형 상담·복지 지원</u> 9. 그 밖에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청소년에 대한 상담·복지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다만, 개정안 제29조제2항제1호(현행 시행령 제14조제1항제1호)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업무로 “청소년과 부모에 대한 상담·복지 지원”을 규정하고 있는바,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우울·불안 등 심리적 고통을 겪고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심리·정서지원 및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고위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종합심리평가 및 집중심리클리닉 운영 등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음. 성평등가족부에 따르면 2026년에 학교 밖·가정 밖 청소년 중 경계선지능 청소년의 심리·정서 지원을 위한 매뉴얼을 제작·배포할 예정이라고 함.

이처럼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현행 시행령 제14조제1항제1호를 근거로 우울·불안 등 심리적 고통을 겪는 청소년에 대한 심리상담 지원과 경계선 지능 청소년을 위한 맞춤형 상담·복지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의 실익을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봄.

“청소년에 대한 상담·복지 지원”과 같이 포괄적으로 규정한 취지는 법이나 시행령의 개정을 수반하지 않고도 청소년 위기 유형이 변화·다양화되는 상황에 맞추어 청소년에 대한 상담·복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는 점과 법체계상 포괄적으로 규정하면서 동시에 개별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봄.

개정안에 대하여 성평등가족부는 최근 청소년 정신건강 문제 심화와 경계선 지능 청소년 지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청소년상담복지센

터의 역할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의 입법취지에는 공감하나, 우울·불안 및 경계선 지능 등 대상별 특성에 따른 지원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해 안 제29조제2항제7호는 집중 심리상담 및 전문기관 연계 중심의 심리·정서 지원으로, 안 제29조제2항제8호는 사회성 발달을 통한 사회 적응력 향상 지원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645

【참고자료】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개요

- (개념) 청소년 상담, 긴급구조, 자활, 의료지원 등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청소년 복지지원기관
 - *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청소년안전망)은 관련기관 협의체로 청소년 안전망 운영 지원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수행
- (근거)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청소년상담복지센터)
- (대상) 9세 ~ 24세의 청소년
- (기능) *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4조(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성 등)
 - 위기청소년 조기 발견·보호를 위한 활동 지원, 상담전화 등의 설치·운영
 - 청소년 상담, 긴급구조, 보호, 의료지원, 학업지원, 자활지원 등의 서비스 제공 및 상담복지 사례 관리 및 자살·자해 등 고위기청소년 맞춤 지원
 -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운영 지원
 - * (근거)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구 분	운영주체	위원회 개최	위원장	역 할
심의위원회	지방자치단체	연 2회 이상 (반기별 1회 이상)	지자체 청소년업무 담당 국장급 공무원	지역 내 위기청소년 지원 협업방안 논의
실무위원회	지방자치단체	연 4회 이상 (반기별 2회 이상)	지역 청소년상담 복지센터장	위기청소년 사례의 발굴·평가 및 판정

- 필수연계기관 및 민간차원의 자발적 참여조직인 1388 청소년지원단 운영 등
- (설치) 지방자치단체별(시·도, 시·군·구)로 설치·운영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40	26	16	10	11	6	3	6	1	33	14	13	16	15	23	22	22	3

- ① 광역시·도 및 세종특별자치시 17개 센터 포함
 - ② 분소 5개소 포함(서울 성북구석관, 인천 중구동인천, 울산 울주군중부, 경기 시흥시정왕, 경남 김해시서부)
 - ③ 기초 시·군·구 226개 중 13개 지역 센터 미설치(서울 중구, 부산 강서구, 인천 옹진군, 대전 동구·중구·대덕구, 울산 중구, 강원 화천군·양구군·인제군·양양군·고성군, 경북 울릉군)
- * 대전 대덕구('24.9월 개소), 대전 동구('25.6월 예정)는 '25년 국비 미지원
- (인력) 시·도 센터 14명(국비지원 6명), 시·군·구 센터 5명(국비지원 2~3명) 이상

- (예산) '26년 33,157백만원(국고보조율 50%)
 - * 포함내역: 시·도센터(3,315), 시·군·구센터(11,827), 정규직전환(457), 집
중심리클리닉(2,583) 종합심리평가(771)
- (체계) 청소년안전망 내 구조-개입-서비스제공 및 연계 수행

